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02월 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4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0.02.10. ~ 2020.02.28.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세부내역 참조
5. 의견제출 부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02-2199-7125, FAX 2199-5640)
6. 제출 기한 : 2020.02.28.까지
 -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납부기간내 사전납부시 20%경감 조치하며, 납부기한 경과시 1개월까지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매1개월마다 1.2%의 증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